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524 발의연월일: 2024. 8. 2.

발 의 자:한정애·허종식·박희승

이학영 · 송옥주 · 이소영

서영교・이기헌・허 영

임오경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최근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그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며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동물대체시험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방안(이 하 "동물대체시험법"이라 함)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.

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함에도 한계가 있고, 동물대체시험법기술개발에 대한 범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.

현행 「동물보호법」은 동물실험에 앞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고, 「화장품법」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할 경우 동물실험을 거쳐 제조된 화장품의 유통·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활성화할필요가 있으므로, 정부 모든 부처가 관련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

련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.

이에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 고 또한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지원이 이뤄 지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"동물대체시험법"이란 첨단기술 등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방법이나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을 말함(안 제2조제1호).
- 나.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물대체시험법협의체를 설치함(안 제5조 및 제6조).
- 다.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물대체시 험법의 연구개발과 보급·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 도록 함(안 제8조 및 제9조).
- 라.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·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체계와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의 근거를 각각 규정함(안 제10조 및

제11조).

마. 국제기구가 검증하고 인정한 동물대체시험법을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국내에 맞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함(안 제12조).

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·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, 국민의 보건 을 향상하는 생명과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동물대체시험법"이란 첨단기술 등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방법이나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 는 시험방법을 말한다.
 - 2. "관계 중앙행정기관"이란 교육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산업통상 자원부, 보건복지부,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말한다.
 - 3. "소관 중앙행정기관"이란 동물대체시험법과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지정·지정취소·평가·보고 등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, 환경부,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을 말하며,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관 분야는 각 목과 같다.
 - 가.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: 농약, 동물용의약품 등 농림 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에 따른 동물대체시험법
 - 나. 환경부 : 화학물질 및 살생물제 등 환경부 소관 법률에 따른

동물대체시험법

- 다. 식품의약품안전처 : 화장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에 따른 동물대체시험법
- 제3조(국가의 책무) 국가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·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·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5조(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환경부장관,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농촌진흥청장(이하 "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"이라 한다)은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관 분야별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·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·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 와 방향
 - 2.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·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환 경 분석
 - 3. 동물대체시험법 연구개발의 지원 및 성과 관리
 - 4. 동물대체시험법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

- 5. 국내외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정보 공유와 협력 방안
- 6. 동물대체시험법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
- 7. 동물대체시험법에 관한 민간 기술개발 지원 및 민간과의 협력 방
- 8. 동물대체시험법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
- 9. 그 밖에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·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동물대체시험법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.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·변경된 기본계획을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⑥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제6조에 따른 동물대체시험법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

- ⑦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- 8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동물대체시험법협의체) ①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·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물대체시험법협의체(이하"협의체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
 - 2. 동물대체시험법 개발·보급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
 - 3. 동물대체시험법 연구개발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
 - 4. 국내 개발 동물대체시험법의 국제 기준 제안에 관한 사항
 - 5. 동물대체시험법 개발·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 - 6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
 - 7. 산업계·학계·연구기관·정부 사이의 협력에 대한 사항
 - 8. 그 밖에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·보급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

다.

- ③ 협의체의 장은 협의체를 운영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협의하여 교대로 정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되고,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협의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.
- 1. 동물대체시험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추천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
- 2. 동물대체시험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
- 3. 동물대체시험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
- ④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실태조사)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·보급 및 이용 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·보급 및 이용에 대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 활성화 등)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물대체시험법 연구개발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산업계·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공동·협동 연구개발을 활성화하여야 한다.
- 제9조(동물대체시험법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)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한다.
 - 1. 동물대체시험법에 관한 정보의 관리 · 유통
 - 2. 산업계·학계,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·단체 간의 인력·기술· 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 협력
 - 3. 그 밖에 동물대체시험법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산업계·학계 및 연구기관 등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0조(동물대체시험법 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)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물대체시험법 개발·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동물대체시험법에 관한 정보체계(이하 "정보체계"라 한다)를 공동으로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·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동물대체시험법정보시스템(이하 "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체계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)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·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지정하거나 공동으로 설치·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동물대체시험법 검증지원센터(이하 "검증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소관별 검증지원센터의 영문 명칭(KoCVAM: Korean Center for the Validation of Alternative Methods)을 사용할 수 있다.

- 1.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 등 농림축산분야 검증지원센터
- 2. 화학물질 분야 검증지원센터
- 3. 식품의약품 분야 검증지원센터
-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의 조정ㆍ협력
- 2.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·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 도의 조사·연구
- 3.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 연구
- 4. 그 밖에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·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④ 검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
- 2. 동물대체시험법의 인정에 필요한 검증 및 평가
- 3. 동물대체시험법 마련 및 표준화
- 4. 국내 개발 동물대체시험법의 국제 가이드라인 제안
- 5. 동물대체시험법 보급 및 교육
-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센터 및 검증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·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⑥ 그 밖에 센터 및 검증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2조(국제기구의 동물대체시험법 도입)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,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(ICH) 및 동물용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(VICH) 등 국제기구가 검증하고 인정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에 맞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전문인력의 양성)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물대체시험 법의 개발·보급 및 이용 활성화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,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- 2.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 - 3.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
 -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 - 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,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국제협력)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물대체시험법과 관련한

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교환, 공동조사·연구 및 기술교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제15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② 이 법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16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관계 기관·단체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·보급 및 이용 활성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